//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

- 행정안전부, 2023. 9

- 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9월부터 12월까지 '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' 징수활동 점 검에 나선다.
 - ※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징수활동 점검 및 부진단체 현장컨설팅 병행
 -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, 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.
 -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,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, 특화·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.
- □ 행정안전부는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(11월)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(11월, 수시),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(6월, 12월) 등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.
 - ※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(10,330명, '22.11월),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(18,319건, '22년)출국금지 요청(687명, '23.6월)
 - 아울러,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*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.
 - * 가상자산의 압류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직접매각 절차 등(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('22.6월))
 -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(행안부-법무부) 강화*를 추진하고,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 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.
 - * 출입국기록 : 매년 8월→매월, 거소 변경 정보 : 월1회→상시(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('23.3월)).
- □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발굴·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

2023 · 09 · 27 www.eAnSe.com 41

앞장선다.

- 재산은닉, 차명사업장,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 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.
-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 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
-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「지방세기본법」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 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.
-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 중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는 요건·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, 광역·기초간 합동조사 실시, 자치단체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□ 한편, 이러한 체납징수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된다.
 -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*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**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.
 - *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('23.3.)
 - ** 생계형 체납자 복지부서 연계 611건(~'23.7.)
 - 또한,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(중소기업은 2개월)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의 일
 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
 - ※ 지방세법 입법예고('23.8.)
- □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□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"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"라고 밝혔다.
 - 덧붙여 "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,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"라고 말했다.

붙임

고액·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개요

□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

- (공개대상) 1년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*인 경우, 성명, 상호(법인명), 직업, 나이, 주소(영업소), 체납세목 등을 공개
 - *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개정('15.5.18.). 1천~3천만원 범위 내 조례로 정함



- (공개방법) 관보·공보, 행안부·지자체의 홈페이지, 위택스에 게시
- 공개제외 대상(「지방세징수법」제11조1항,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)
 - 체납액의 50% 이상 납부하거나,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
 - 체납액이 징수유예중이거나 회생계획일정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
 - 지방세심의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
- □ 고액·상습체납자 수입품 등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
 - 자치단체와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·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*가 마련되어 '21. 1. 1.부터 시행**
 - * 관련 법령: 지방세징수법 §39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§45의2, 관세법 §237
 - ** 법 시행 후 1년 경과 체납분에 적용되어 '22년 하반기부터 실무적으로 운영
 - 자치단체는 고액·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*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 청에 위탁하여 체납액 징수
 - * ① 입국시 휴대품, ② 특송품(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), ③ 일반 수입품 등

< 관세청 위탁 업무흐름도 >

자치단체장						세관장		
① 체 납 처 분 前 납부안내	\Rightarrow	② 체납위탁 (자치단체→ 세관장)	\Rightarrow	③ 위탁사실 통지 (자치단체→체 남자)	\Rightarrow	④ 수입물품 체납처분	\Rightarrow	⑤ 징수금액 송금 (세관장→자치단 체장)

- □ 고액·상습체납자 감치
 -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 내 유치장 등에 구인(拘引)
 - * 관련 법령: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, 시행령 제19조의2 ('22.7.28시행)
 - ※ 도입사례 : 국세징수법(제115조), 관세법(제116조의4), 질서위반행위규제법(제54조), 민사집행법(제68조), 가사소송법(제67조) 등

ㅇ 대상

2023 · 09 · 27 www.eAnSe.com 43

- ①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, 체납 1년 경과, 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상
- ②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
- 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
- 감치 절차운영



- 감치 신청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부여
- 감치에 처한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음
- 감치 집행 중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감치 집행 종료
- □ 전국합산 체납액 기준 출국금지 요청
 - 체납액 3,000만원 이상이고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출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
 - * 관련 법령: 지방세징수법 제8조
 - '23년부터 고의적·악의적 체납 대응을 위해 전 자치단체 및 행안부 합동 전국합산 출국금 지 추진
 - * 관련 법령: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